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81
----------	------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나.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인·단체·개인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 마련
-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 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자체 개선안 1건 반영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 성별 균형 참여적 관점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자체 반영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보건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은아